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미술의 정의 및 공공미술 작품의 보호·관리 규정 등 신설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64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공미술의 정의 및 공공미술 작품의 보호·관리 규정 등 신설 (안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의5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12.

다. 회 부 일 : 2026.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비방·모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반 시민들의 감상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공공미술 작품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사회의 미관을 증진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미술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5 및 제7장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공공미술의 정의 및 공공미술 작품의 보호·관리 규정 등 신설

(안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의5 신설 등)

개정안은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공공미술”로 정의하고(안 제2조제1항제5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관리 지원 등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안 제15조의5제1항),

아울러,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손괴·이동·제거·은닉하는 등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와 공공연한 비방·모욕 등 소란한 행위로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안 제15조의5제2항 및 제3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1천만원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5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u>증진</u> <u><신설></u>	제2조(정의)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공미술”이란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u>증진</u> 등 제15조의5(공공미술 작품의 보호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관리 지원 등 공공미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공공미술 작품을 손괴, 이동, 제거,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공공미술 작품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비방·모욕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 8. (생략) 9. <u>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u> 진흥을 위한 사업 10.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 -----. 1. ~ 8. (현행과 같음) 9. <u>공공미술</u> ----- 10. (현행과 같음) <u>제7장 벌칙</u> 제42조(과태료) ①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미술 작품을 손괴, 이동, 제거,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를 훼손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5조의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미술 작품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비방·모욕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관람을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현행법 제18조¹⁾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면서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그 지원 대상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전시되는 미술작품을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공미술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규정에서 공공미술에 관한 설명적 문구를 두고 있을 뿐, 공공미술의 개념을 법 전반에 적용되는 정의 규정으로 명시하거나 공공미술 작품의 훼손 방지 및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한 행위 규제, 보호 조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²⁾하고자 2023년 7월 25일 제정(2024. 7. 26. 시행)된

1)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미술진흥법」에도 공공미술품의 개념 정의³⁾는 확립되었지만 그보다 상위 개념으로 보이는 공공미술의 개념 및 공공미술 작품의 보호 조치 등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 상황임.

한편, 공공미술 작품은 국민 누구나 접근·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으로서 도시 및 생활환경의 미관을 형성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공공장소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비방·모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반 시민의 감상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행법에 근거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2) 「미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미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은 제외한다.

가. 제14호에 따른 정부미술품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교육청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제30조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하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

이에 개정안은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공공미술”로 정의함으로써 공공미술의 개념을 법률상 명확히 하고(안 제2조제5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관리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5제1항).

아울러, 개정안은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안 제15조의5제4항).

이는 공공미술을 단순한 개별 사업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문화정책의 한 분야로 정립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개정안은 공공미술 작품을 손괴·이동·제거·은닉하는 등 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와 공공연한 비방·모욕 등 소란한 행위로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안 제15조의5제2항 및 제3항), 위와 같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42조).

이는 공공미술 작품의 물리적인 훼손 행위뿐 아니라, 작품의 감상 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문화향유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15조의5제3항4)은 공공미술 작품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비방·모욕 등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미술 작품은 대중에게 공개된 공간에 설치·전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평가할 수 있는 창작물로서 미적 평가, 비판, 풍자 등 다양한 가치 판단이 수반될 수 있는 영역임.

나아가, 「형법」 상 ‘모욕5)’이나 ‘비방6)’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개념으로, 이를 사람이 아닌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평가 행위에 적용하는 경우 적용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게 해석될 여

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2215964호)

제15조의5(공공미술 작품의 보호 등) ③ 누구든지 공공미술 작품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비방·모욕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지가 있으며, 그 결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공공미술 작품”의 소유자, 형태, 설치 방식 등이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 법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보호·관리 및 행위 규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과 같이 “공공미술”의 정의규정과 공공미술 작품의 훼손 방지 및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한 행위 규제, 보호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미술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과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내에서 입법화하는 방안과,

미술이라는 문화예술의 한 세부 분야를 특정하여 규율하며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폭넓게 향유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률인 「미술진흥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법체계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미술 진흥 및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먼저, 개정안 제2조제5호7)의 “공공미술” 정의는 범위가 포괄적이고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정책 추진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⁸⁾를 참고하여 공공미술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된 작품’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음으로, 개정안 제15조의5제2항⁹⁾의 공공미술 작품 훼손 금지 규정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나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조 제3항¹⁰⁾의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비방·모욕 등 소란 행위

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2215964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미술”이란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미술”이라 함은 공원·도로·녹지대 등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미술”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되는 회화·조형물(조각, 상징물, 상징탑 포함)·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2215964호)

제15조의5(공공미술 작품의 보호 등) ② 누구든지 공공미술 작품을 손괴, 이동, 제거,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타인의 관람 방해 행위 금지 규정은 ‘비방·모욕하는 등 소란한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여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와 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공공미술의 특성상 관람객에 대한 규제가 공공미술의 향유 및 관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고,

같은 조 제4항¹¹⁾의 재정 지원 규정은 공공미술의 범위가 포괄적인 점과 재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제한하고, 같은 조 제5항¹²⁾의 위임 규정은 국가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임 범위를 ‘대상·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유사업법례 참고¹³⁾).

아울러, 개정안 제42조제3항¹⁴⁾의 과태료 부과 주체에 대해서는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설치·관리 지원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
- 1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2215964호)
제15조의5(공공미술 작품의 보호 등) ③ 누구든지 공공미술 작품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비방·모욕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2215964호)
제15조의5(공공미술 작품의 보호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2215964호)
제15조의5(공공미술 작품의 보호 등)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미술진흥법」
제7조(창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2215964호)
제42조(과태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게 부과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1

공공미술 관련 사업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총 지출 예산	주요내용
공공미술사업 운영	총 29.9억원('12~'14) *기본지원(아카이빙 구축, 조사연구 등) 15.9억, 프로젝트 지원 14억	·건축물 미술작품 기록관리 및 우수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공공미술 사회적 가치 확산 -작품 실태점검 및 연구, 아카이빙 -지역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미디어아트 등) -우수 공공조형물 활용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아르코 공공예술	총 134.5억원('20~'24) *기본지원(작품 운영 연구 지원, 운영비 등) 13.8억, 프로젝트 지원 120.7억	·공공의 문제에 대한 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조명 -공공미술 작품 연구·활용 프로젝트 지원 -공공의 문제를 주제로 기획한 예술 프로젝트 지원 -공공예술에 대한 연구 및 담론 활성화 지원
건축물미술작품 및 공공미술진흥	총 2.1억원('25) *실태점검 및 매뉴얼 제작 0.8억, 공공미술 포털 운영 및 개선 1.3억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운영 지원 및 공공미술포털 운영 -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운영 현황 및 사례 조사를 기반으로 업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작 - 전자적 형태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 플랫폼 운영을 통한 업무 지원 및 포털 기능 개선을 위한 개편 추진